

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 및 소득액 결정요인

김지경* · 김하너**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6차년(2003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최종 소득활동에서 물러난 완전은퇴 남성의 소득원천과 소득액을 은퇴시기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주된 소득원천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각각 다항로짓분석 모델(Multinomial Logit Analysis)과 토빗모델분석(Tobit Analysis)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은퇴 남성은 은퇴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평균 1.27개의 소득원에서 얻고 있었으며, 총소득액의 85% 이상을 주된 소득원천에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지 못하며 주된 소득원천을 상실할 경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은 배우자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대부분이나, 은퇴시기와 각 개인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근로생애 동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자산축적의 기회 그리고 은퇴할 시점에서의 사회보험수급혜택의 여부와 정부의 공부조 수급자격 충족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주된 소득원천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어떠한 소득원천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소득수준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원천을 보유하는 것과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임을 시사한다.

1. 서론

OECD 국가 55~65세 미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비율이 74.9%로 일본(83.8%), 스위스(77.1%), 스웨덴(76.2%)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OECD DB, 2006). 이처럼 우리나라 고령층 남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은 것은 공적 연금 제도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성숙하여 노년기의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일을 계속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제도적인 요인과 자영업과 농업부분의 비중이 크다는 산업 및 노동시장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OECD, 2004;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 2004; 장지연, 2005).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최종 은퇴연령은 68.2세로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높다(OECD, 2004).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층 남성 근로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늦은 완전은퇴 시기가 근로생애

*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동안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의미한다거나, 노년기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확보와 노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약 76% 정도, 특히 대기업의 경우 97% 정도가 연령만을 이유로 종업원을 퇴직시키는 '정년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평균 정년연령이 56.9세이며, 단일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 중 55세를 정년으로 하는 비중이 44.1%(노동부, 2006)에 이르기까지 하여, 대략 55세 이후의 근로활동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된

일자리를 퇴직 한 후 새롭게 시작한 불연속적 일자리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방하남 외 3인, 2004). 문제는 불연속적인 일자리에서의 근로라기보다는 고령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업종과 직종이 매우 한정적이고 저임금·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어 고용의 질이 높지 않다는 사실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모순과 연령차별, 그리고 고령인력에 대한 고용기피 등의 사유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노동부, 2006).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기회의 선택과 배제과정이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면서, 자신의 근로소득에 생애 경제적 복지를 의존하는 이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고령층 남성 퇴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고용의 질이 대체로 낮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자신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근로생애 후반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 의욕과 경제적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재취업하지 못하는,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여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중고령자들의 경우는 가교 일자리(bridge jobs)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비자발적인 완전은퇴 상태에 이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55세를 전·후하여 이른 시기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함과 동시에 완전은퇴로 전환된다면, 조기에 완전은퇴에 이른 이들의 경제적 복지는 근로생애 동안 누적해 온 개인 저축이나 자산, 다른 가족원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또는 함께 사는 가족원의 근로소득에 의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도입역사가 짧은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등 공식적인 사적보장제도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등 사적 소득이전체계에 의한 비공식적 지원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즉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일정 대상 연령층에게 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이 아닌, 근로세대에게 적용하여 그들이 은퇴 후에 연금혜택을 받게 되는 적립방식(Funded System)의 구조이기 때문에 현 시점의 완전은퇴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있어 주된 소득이 되기는 어렵다. 게다가 1999년에 도시지역 자영자까지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실제적용 대상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50% 수준(OECD, 2004)에 불과하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20% 수준(석재은, 2005)이며, 영세규모 사업체 근로자의 대다수가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지 못한 실정(박경숙, 2001)이어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가입기회는 현실적으로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은퇴 후 노년기의 주된 소득원천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원연금(1975년)의

경우는 이미 본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의 적용대상이 많지 않아 이것을 근거로 공적 특수직역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주축이라고 보는 것은 어려우나,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민연금의 급여율이 45%인데 반해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율은 70%(석재은, 2005)라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소수에 한정해서는 공적연금소득이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주된 소득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사적연금의 경우는 1994년 이후 큰 폭의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장려책이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은퇴 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수단으로 활용(OECD, 2004)되고 있는 수준이어서 공적연금의 미비를 사적보장제도가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완전은퇴에 이르게 되는 시기와 근로생애(work life)를 마감하는 과정은 개인의 생애 노동경력에 따라 다르며, 생애 근로활동 기간에 누적적으로 얻게 되는 노동기회구조와 사회보험혜택의 기회에 따라 은퇴 생애(retirement life)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소득원의 확보와 유형 그리고 소득액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정년퇴직 후 바로 완전은퇴 상태로 전환되거나 그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준비되지 않은 조기퇴직에 직면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수급개시 연령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기에 주된 소득원을 상실하는 완전은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생애 동안 축적된 공적연금이 은퇴 이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된 소득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구 선진국과 같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공적연금이 발달해 있고 정년퇴직연령이 공적연금수급개시 연령과 같거나 근접(Scherer, 2002)하여 소득원의 안정적인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다수 고령자들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 근로활동을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적연금이 완전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주된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근로생애 전반에 걸쳐 또는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자신의 근로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을 기대할 수 없는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낮은 취업지위에서 불안정한 근로경력을 노년기까지 이어가다가 완전은퇴에 이르고, 근로소득을 상실한 이들의 경우 빈곤층으로 편입되어 정부의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이나 직업지위가 높은 일자리에서 늦은 시기에 은퇴한 고령자들의 경우는 가장 긴 근로경력을 가질 것이고, 근로생애 동안 누적된 자산과 사회보험혜택 등으로 인하여 완전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천을 다수 보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완전은퇴 이후 경제적 복지의 근간이 되는 소득원천의 확보와 소득액의 수준이 개인별로 이질적인 생애 노동과정과 경력에서 누적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완전은퇴 후 소득원천과 소득액의 수준은 완전은퇴자들의 개별특성과 근로경력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전은퇴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의 생애 근로경력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기본 전제로 하여, 완전은퇴 남성이 생애 노동경력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은퇴 후 소득원천과 소득액 수준이 완전은퇴에 이르는 시기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한국노동패널(KLIPS) 6차년(2003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완전히 그만두었다고 자기 선언한 은퇴 남성을 대상으로 하

여 이들을 완전은퇴 시기를 기준으로 4그룹(① 55세 미만 연령에 완전은퇴, ② 55~60세 미만 연령에 완전은퇴, ③ 60~65세 미만 연령에 완전은퇴, ④ 65세 미만 연령에 완전은퇴)으로 나누고, 은퇴자들의 소득원천과 소득액의 수준을 각 특성과 그룹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과 소득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각각 다항로짓분석 모델(Multinomial Logit Analysis)과 토빗모델분석(Tobit Analysis)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인의 근로소득을 상실한 완전은퇴자들이 어떠한 소득원천을 통하여 은퇴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은퇴자의 경제적 복지 및 노년기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관련정책의 수립에 구체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의 고찰

1. 완전은퇴 시기와 과정의 다양성

미시경제학적 관점에 의하면 은퇴 시기는 개인의 직업특성, 이전소득의 유무 및 수준, 일-여가 간 개인의 선호(work-leisure trade-off)에 의해 결정된다.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발달한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공식 정년인 65세보다 이른 시기에 조기은퇴하는 경향이 1970년대부터 나타났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핀란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이미 1970년대 초반에 평균 완전은퇴 연령이 62세 정도였고,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60세 이하로 낮아졌다(Scherer, 2002; 방하남 외 3인, 2004). 이와 같은 서구 선진국의 조기퇴직의 경향은 미시경제학적 관점을 근거로 하였을 때, 일-여가의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자발적인 여가선택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사회보장과 노동공급은 서로 상충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적 이전소득이 제공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일과 여가 중에서 여가를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Quinn & Burkhauser, 1994).

그러나 일-여가 선호 중심으로 설명하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은 우리나라 남성의 조기퇴직,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를 퇴직 한 후 완전은퇴 상태로 전환하는 이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나 완전은퇴상태에 있는 과정이 개인의 선호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고 완전은퇴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증폭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기퇴직을 하게 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에 따른 재취업 기회의 제한 등으로 근로생애를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시경제학적 관점은 65세 이후, 늦은 시기에 완전은퇴하는 이들에 대한 설명에서도 제한점을 갖는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수급권이 제한적이고, 수급혜택의 수준도 아직까지 미비하여 일과 여가의 선택에 있어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균 68.2세까지 완전은퇴를 미룬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비교적 은퇴시기가 늦은 자영업 취업

비율이 높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또는 가족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늦은 나이까지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창출 하는 동양사회의 '일의 문화(culture of work)'의 영향(방하남 외 3인, 2004)으로 늦은 시기에 은퇴를 하는 이들에게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의 선호와는 독립적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정년제도나 기업의 인사관리제도는 우리나라 남성의 은퇴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완전은퇴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완전은퇴 남성의 은퇴사유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본인건강상의 사유(41.5%)를 제외하고 정년퇴직(25.4%) → 권고사직/명예퇴직(20.0%)의 사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김지경, 2005). 정년퇴직의 경험은 고령층의 남성이 주된 일자리 이후 재취업을 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60대 남성의 취업확률을 20% 정도까지 떨어뜨리기도 한다(OECD, 2004). 기업들이 정하고 있는 정년연령은 대체로 55-57세인데, 2006년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유형을 나누어 정년연령의 분포를 살펴보면,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55세(44.1%) → 58세(23.7%) → 60세 이상(14.9%)의 순이며, 단일정년제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정년이 54세 이하인 비중이 12%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정년연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권고하는 정년연령(60세)과 노령연금수급개시 연령(60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기업의 조기퇴직제도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효율임금이론(theory of efficiency wage)'에 의해 설명된다(Lazear, 1979). 연공(年功)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력구조는 기업의 고비용구조를 초래하게 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고령인력의 조기퇴직 유인을 강하게 갖게 한다. 우리나라의 호봉제와 같은 이연보상체계(delayed payment contract)는 그 자체로 고정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고령자들을 채용할 유인이 줄게 된다(김정환, 2006). 따라서 고령층의 노동력이 다른 연령층의 노동력과 생산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업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보다는 신규인력의 고용을 선호하게 된다. 명예 퇴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연령을 고려한 기업이 55%나 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연령을 고려한 사업체가 52%(황수경·황준욱·신현구·어수봉·장지연, 2004)라는 사실은 기업내부에서 고령자를 배제함으로써 조기퇴직자를 양산하는 단적인 인사관리의 예라 할 수 있다.

은퇴시기가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미시경제학적 관점과는 달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제도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컨대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이 낮아진다면 노령연금이외에 고령자들이 정년 연령 이전에 실업상태에 들어갈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장기간 소득대체 실업급여를 받는 장기실업급여나 노령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대체급여를 받는 장애급여와 같은 다른 대체 제도적 장치들의 제공은 이른 시기에 은퇴할 충분한 유인책이 된다는 것이다(Quinn, Burkhauser & Myers, 1990). 서구 복지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체급여의 제공 때문에 노령연금을 수급받기 이전일지라도 자신의 소득에 큰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65세를 전후 하여 일제히 퇴직하는 경향(방하남 외 3인, 2004)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요인에 따른 조기퇴직

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되어가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적이며 재취업 하더라도 낮은 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이어지는 현재의 근로여건이 지속된다면,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고령자들이 근로생애를 연장하여 완전은퇴시기를 연기하기 보다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급여 소득에 의존한 조기퇴직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이른 시기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 바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노동의 강도나 일의 양을 서서히 줄인다거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른 일을 하면서 최종 은퇴를 연기하는 행태들도 보인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완전은퇴 시기를 지연하는 이유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천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와 욕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설명된다. 자영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이 정년제로 인하여 일정 시기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한 이후 완전은퇴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연기된 완전은퇴에 이르기까지 가교일자리(bridge jobs)를 갖는데, 이 기간은 대략 12~14년 정도가 된다(OECD, 2004; 방하남 외 3인, 2004). 서구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은퇴자의 1/4정도는 완전은퇴를 하기 전에 가교일 자리를 보유하고(Rhum, 1990a, 1990b, 1991), 자영업과 시간제 근로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은퇴 사이의 중간 일자리로 이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Quinn, 1981; Gustman & Steinmeier, 1984). 우리나라의 경우도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 정도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것(지은정, 2006)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정규직 임금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한다거나 임시직이 또는 자영업자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장지연, 2003). 이는 정규직임금근로의 생애 주된 노동경력을 가지는 남성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가교일 자리를 갖기보다는 바로 완전은퇴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 은퇴 후 소득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완전은퇴자들이 은퇴생활을 위하여 얻는 소득은 은퇴 전 근로생애 기간 동안에 누적된 소득획득의 기회구조와 혜택여부의 결과에 의존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직업지위의 차이가 누적되어 은퇴 후 소득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시간성(the temporal distribution of resource)을 강조하는 논의에 따르면 생애과정의 이질성은 기회구조로부터의 혜택(advantages)과 불리(disadvantages)가 시간을 통해 지속되고 누적된 결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Merton, 1968; 박경숙,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관점은 완전은퇴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이 생애 한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나 연금수급여부 또는 노동시간의 감소 등을 근거로 하여 이전 시간과의 분절된 사건(discrete event)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연속적으로 시간 누적적인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은퇴 후 소득원천과 소득수준에 대한 접근방식도 은퇴 이전의 노동경력과 근로생애 기간 동안에 축적된 기회와 혜택의 결과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은퇴 이후의 경제적 복지가 근로생애의 내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견해(Hardy, 1985; Kohli, 1988; Hayward·Grady·Hardy·Sommers, 1989)를 고려해보면, 은퇴 전 노동경력이 고용안정과 높은

임금, 승진기회 등이 부여되는 1차 노동시장(primary sector)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불안정고용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2차 노동시장(secondary sector)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여부에 따라 은퇴 후 소득원천과 수준의 차이는 클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공적연금의 수급권과 연금수급액의 수준은 근로생애동안 노동시장에서의 근로기간 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소득은 은퇴 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김지경, 2005). 은퇴 후 소득원천의 하나인 공적연금은 다른 어떤 일자리에에서의 경험보다도 생애 가장 오래 근무했던 주된 일자리의 업종과 직종 그리고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Abbot, 1977). 장기간의 근로경력과 근로 생애에 획득한 소득은 자산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원천을 증가시킬 수 있다(성영애, 1994; 김지경, 2005).

은퇴한 고령자들의 소득원천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보다 제도화되고 공적인 소득이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통례이다(방하남 외 3인, 2004). 이는 복지사회로 발전할수록 노인을 비롯한 소득을 상실한 은퇴자들을 부양하는 주체가 가족에서 사회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구성은 여전히 가족의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실정이나, 점차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2002, 2007) '사회통계조사'의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주된 생활비 조달방법'에서 2002년과 2007년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2002년에 자녀나 친척에게 의존한다는 비율이 25.0%에 달하였던 것이 2007년에 19.8%로 5.2%p 낮아졌고, 연금으로 생활비를 조달한다는 응답비율은 2002년 9.3%에서 2007년 16.8%로 7.5%p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조달한다는 응답비율이 2002년 50.4%에서 2007년 66.4%로 16%p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노년기 생계비를 위해 완전은퇴시기를 연장하는 고령남성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는 달리 재산소득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비율은 2002년에 12.4%, 2007년에 10.2%로 오히려 2.2%p 감소하였다.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자들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48.8%가 1개의 소득원천을 갖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원이 다양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대상자의 가장 많은 비율인 25.8%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배우자의 근로소득(18.7%), 공적연금(11.9%), 부동산소득(11.6%) 순으로 소득원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의 은퇴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비율이 39.8%로 나타났다(방하남 외 3인, 2004).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던 것을 2000년 10월에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확인된 국민에게 보충적 생계급여를 통하여 빈곤선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정(석재은, 2005)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연령대 은퇴자들의 경제적 복지의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은퇴자와는 달리 55세 미만에 조기은퇴한 은퇴자들의 경우는 54.9%가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통계 분석의 결과는 현재 연령이 50대 초반인 완전은퇴자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의 소득에 의해 경제적 복지가 유지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의 완전은퇴자들은 정부의 공공부조에 생계비를 의존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은

퇴자 각 개인의 어떠한 특성과 은퇴 전 노동시장에서의 어떠한 경력 내용이 은퇴 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요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발달해 있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은퇴 후 소득을 논의하는데 있어 공적 연금이나 기업의 퇴직연금제도가 중심이 되나, 아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공적·사적 연금이 은퇴 후 소득의 주된 소득원천으로 거론되기는 어려우나 보편적인 제도로써 발달하게 되면 향후 은퇴자들의 경제적 복지를 지지할 수 있는 핵심 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구분된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경로연금이 있으며,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이나 노령수당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 대상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제도이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선 이하의 빈곤층만을 급여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제도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는 공적연금을 제 1차 안정망으로 하고,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며,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석재은, 2005).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 1년에 한 달 치의 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는데 따른 것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에는 퇴직금이 퇴직 후 제한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했으나, 1997년 중간정산제가 시행되면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은 취약해졌다. 실제 퇴직금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 전 최근 3개월 동안의 초과수당과 보너스를 포함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데, 20년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 연봉의 2.5배, 40년 근속한 경우는 3.3배 정도이다(OECD, 2004). 향후 사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은퇴 후 소득원천으로서의 퇴직금의 역할은 퇴직연금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연금은 외국의 경우 기업연금(corporate pension) 또는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와 퇴직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다. 퇴직금제도가 법정 강제제도이므로 퇴직연금제도도 강제제도로 운영되기는 하나, 운영에 있어서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갖는 점에서 과거의 퇴직금제도와 다르며, 운영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과 다르다.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의 역할과 비중이 큰 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는 기업연금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welfare-model), 공적연금의 역할이 약한 미국과 같은 시장주의적 시스템(market based model)에서는 퇴직연금중심의 사적연금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원식·방하남, 2005). 한편 1994년 6월에 도입된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세제 혜택이 있는 저축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OECD, 2001).

이 밖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위한 소득수준은 낮고, 정부의 지원은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고령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역저당제도(Reverse

Mortgage)도 은퇴자들의 소득원을 제공하는 하나의 소득보장제도이다. 역저당제도는 현재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과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령자들이 주택을 상속, 증여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문제와 낮은 담보인정 비율, 고금리, 기한부 대출 등의 문제로 1995년에 도입된 이후 활용 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예컨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은행의 판매실적은 17건, 조흥은행이 2000년에 1건 정도였다(최은희, 2006). 이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6개 민간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과 2개의 보험사(삼성화재, 흥국생명)가 참여하는 ‘공적 보증 역저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가입자의 월 지급액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 보증을 함으로써 역저당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공적 보증 역저당 제도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오정일·최우석, 2007). 이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74세로 가입 기준 연령(만65세) 보다 9세 많고, 매월 평균 104만 7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동아일보 2007년 8월 15일자). 이와 같은 역저당 제도는 생애 축적된 부동산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적 소득 보장제도이기는 하나, 그 제도의 이용 대상자가 선별적이어서 일정 계층이상의 은퇴자에게만 소득원천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6차년도(2003년) ‘중·고령자’ 부가조사이다. 여기에서는 만 5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활동의 경험과 현재의 경제활동여부 그리고 은퇴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고려하여 ‘① 은퇴하였다, ② 주된 일자리에서는 은퇴하였으나 소일거리 일은 계속하고 있다, ③ 은퇴하지 않았다, ④ 과거에 한 번도 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의 4가지 응답 항목으로 은퇴상태를 측정하였다. 완전은퇴 남성의 은퇴 후 소득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퇴직 후 어떠한 소득활동도 하지 않고 자기 선언적으로 ‘① 은퇴하였다’라고 응답한 남성 568명만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생애 노동공급의 유형과 노동경력 과정 그리고 완전은퇴에 이르는 사유 등 근로생애의 내용이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즉 현재 만 50세 이상의 남성은퇴자 집단과 여성은퇴자 집단은 서로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김지경, 2005). 따라서 생애 노동시장에서의 시간 누적적인 경험의 결과로서 접근하여 은퇴 후 소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남성은퇴자만을 분석할 것이며, 여성은퇴자의 은퇴 후 소득과 성별 비교는 후속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2. 분석변수 및 모델

완전은퇴 남성의 소득원천과 소득수준을 완전은퇴 시기별로 나누어 비교하고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χ^2 -test, 그리고 GLM-test를 하였고, 은퇴 후 소득원천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 모델(Multinomial Logit Analysis)과 토빗모델분석(Tobi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각 모델의 독립변수는 은퇴 후 소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Herz, 1995; McDonnell, 2001, 2006; 권문일, 1997; 김일중 1999; 손병돈, 1999; 박경숙, 2001; 안중범·전승훈, 2002; 김지경, 2005; 김인숙, 2006; 김태일, 2007; 김희삼, 2007; 최효미, 2007)에 근거하여 완전은퇴 남성의 개인특성과 가구특성 그리고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의 특성의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로서 분석된 은퇴사유는 한국노동패널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 15개 항목으로 측정된 것을 ① 정년퇴직, ② 권고사직/명예퇴직(권고사직/명예퇴직/해고/다른 일자리를 못 구함/고용주의 압박), ③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 ④ 기타(가계의 여유/여가를 즐기기 위해/가족과 시간을 보내기위해 등)의 4가지로 범주화하고 이를 가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9가지 항목(배우자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개인연금소득, 금융자산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 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사적이전소득)으로 측정된 소득원천도 ① 배우자근로소득, ② 연금소득(공적연금+사적연금), ③ 자산소득(금융+부동산), ④ 공적이전소득(사회보험+정부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 ⑤ 사적이전소득의 5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들 중 가장 많은 소득액을 얻는 것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모델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 값이 최대 0.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 후 소득원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항로짓모델은 이항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의 연장으로 독립변수들이 비서열적인 종속변수의 범주들에 속할 확률을 추정한다. 본 연구의 다항로짓모델에서의 종속변수는 ‘주된 소득원천’이며, 분석모델의 식은 다음과 같다.

(1)

$$\log \left[\frac{\text{Prob}(y = j)}{\text{Prob}(y = J)} \right] = \sum_k^K \beta_{jk} \chi_k$$

여기서 $j = 1, 2, \dots, j$ 는 종속변수의 범주를, $k = 1, 2, \dots, K$ 는 K 개의 독립변수(χ)의 구분, β 는 모형의 모수(parameter)를 나타낸다. 종속변수 범주의 숫자가 J 일 경우 다항로짓모델에서는 $J-1$ 개의 모수추정치가 나오며, 총 모수의 숫자는 $(K*(J-1))$ 개가 된다. J 개의 종속범주 중에서 j 범주에 속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2)

$$\text{Prob}(y = j) = \frac{\sum_{k=1}^K \beta_{jk} x_k}{1 + \sum_{j=1}^{J-1} e^{\sum_{k=1}^K \beta_{jk} x_k}}$$

은퇴 후 소득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토빗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월평균 소득액’이다. 토빗모델은 종속변수가 양적인 변수이나 일정한 영역에서는 관측될 수 없어 제한된 값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적 종속변수(limited dependent variables) 분석모델 가운데 하나이다. 즉 은퇴 후 본인의 소득원천이 전혀 없어 소득이 ‘0’의 값을 갖는 은퇴자가 포함되어 분석된다. 분석대상자인 완전은퇴 남성 568명 중 소득원천이 없는 이들은 99명(17.4%)으로 왼쪽 절단(left-censored)된 형태로 분석된다. 분석모델의 식은 다음과 같은 표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begin{aligned} Y_i &= \beta_0 + \beta_i X_i + \mu && \text{if } Y_i^* > 0 \\ &= 0 && \text{if } Y_i^* \leq 0 \end{aligned}$$

표식에서 $Y_i^* > 0$ 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액이 0보다 큰 값을 갖는 관찰 가능한 경우이고 $Y_i^* \leq 0$ 의 경우는 소득원천이 없어 소득액이 0인 절단된 경우이다. 이와 같은 모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분석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변수값 설명	
독립 변수	공통	개인특성	현재연령	2003년 현재 만 연령
			은퇴시기(연령)	55세 미만: 1(그 외: 0) 55~60세 미만: 1(그 외: 0) 60~65세 미만: 1(그 외: 0)
			은퇴 후 경과기간	2003년-완전은퇴한 년도
			학력	교육 년수
			배우자유무	유배우자: 1(무배우자: 0)
		가구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그 외: 0)
			거주지역	서울·경기: 1(그 외: 0)
			주택소유여부	소유: 1(비소유: 0)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특성	가구소득	2002년 한 해 월평균 가구총소득의 자연로그 값
			은퇴사유	정년퇴직: 1(그 외: 0)
	권고사직·명예퇴직: 1(그 외: 0)			
	직업		본인의 건강사유: 1(그 외: 0)	
			전문·사무직: 1(그 외: 0)	
		생산직: 1(그 외: 0)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1(비임금근로자: 0)		
임금		2003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된 임금의 자연로그 값		
토빗 모델	소득원천	근속기간	첫 취업 후 퇴직 시까지의 근속년수	
		소득원천의 수	은퇴 후 소득을 얻는 원천의 개수	
	주된 소득원천	배우자근로소득: 1(그 외: 0)		
		연금소득: 1(그 외: 0) 자산소득: 1(그 외: 0) 공적이전소득: 1(그 외: 0)		
종속 변수	다항 로짓 모델	주된 소득원천	소득원천 없음: 1 배우자 근로소득: 2 연금소득: 3 자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 5 사적이전소득: 6	
	토빗 모델	월평균 소득액	2003년 현재 은퇴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액	

IV. 분석 결과

1. 완전은퇴 남성의 개인, 가구,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은퇴 남성의 은퇴시기별 개인 및 가구 그리고 은퇴 전 생애일자리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χ^2 검증 결과, 배우자유무와 은퇴 전 월평균 임금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분석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이고, 이들의 평균 완전은퇴 연령은 58.2세로 평균 정년연령인 56.9세(노동부, 2006)보다 다소 높고, 우리나라 남성

의 완전은퇴 연령인 68.2세(OECD, 2004)보다 10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은퇴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4집단(① 55세 미만, ② 55~60세 미만, ③ 60~65세 미만, ④ 65세 이상) 중 55세 미만에 완전은퇴 하였다는 비율이 28.5%로 가장 높고, 평균 정년은퇴 연령을 포함하는 연령대인 55~60세 미만은 25.2%, 60~65세 미만 연령대는 25.3%, 65세 이상 연령에서 완전은퇴 하였다는 비율이 2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완전은퇴 시점부터 현재까지 은퇴 후 경과기간은 평균 9.8년이며, 55세 미만 연령에서 조기은퇴한 이들이 14.4년의 가장 긴 경과기간을 갖는 반면, 65세 이상 연령에서 은퇴한 이들은 6.7년의 가장 짧은 경과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시기에 따른 은퇴생애 기간의 차이가 대략 7.7년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은퇴자들의 개인 특성별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에 있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은퇴한 이들이 평균 7.6년의 가장 짧은 교육년수를 보인 반면, 55세 이전 연령대에서 은퇴한 이들은 평균 9.8년의 가장 긴 교육년수를 나타냈고, 대졸자의 구성비도 30.9%로 가장 높았다. 이는 65세 이상 연령에서 은퇴 한 이들이 서울/경기(19.8%) 및 광역시(18.5%)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은퇴 전 농림어업직에 종사하였던 비율(37.1%)이 높다는 고령층 세대의 특성, 그리고 정규직 전문/관리/사무직 남성이 퇴직 후 가교일자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장지연, 2003)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만으로 55세 미만에 은퇴한 이들의 대다수가 전문/관리/사무직에서 조기은퇴한 이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55세 미만에 조기은퇴한 이들의 은퇴 전 직업분포를 보면, 전문/사무직(29.0%)에서 권고사직/명예 퇴직한 이들의 비율(33.3%)이 높고,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비율(36.0%)이 높기는 하나, 은퇴 전 서비스/판매직(37.8%)나 생산직(30.3%)에 종사하였던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의 지위가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30.0%)도 높기 때문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55세 미만에 은퇴한 이들의 33.6%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55~60세 미만에 은퇴한 이들의 33.9%는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여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55~60세에 은퇴한 연령대에서 정년은퇴자가 가장 많고(38.5%), 은퇴 전 상용직 임금근로자로 일하였던 비율(30.2%)이 높으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20.2년)이 55세 미만에 은퇴한 이들의 근속기간(15.9년)보다 길다는 분석결과를 고려해보면, 55~60세 미만의 정년은퇴자들이 비교적 고용안정과 노동환경이 좋은 1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경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여건이 좋은 곳에서 근로생애를 보냈던 완전은퇴자들의 주관적 건강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택의 자가 소유 여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보유 비율(29.4%)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55~60세 미만에 은퇴한 이들이 월평균 16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세를 기준으로 하여 60세 이후에 은퇴한 이들은 전체 평균(141만 3천원)보다 낮은 가구소득을 갖고, 60세 이전에 은퇴한 이들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가구소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가족원의 소득수준의 차이와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출가 등 가족구성의 축소와 같은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생애변화 등과 같은 차이에 의한 결과로 이해된다.

〈표 2〉 완전 은퇴시기별 개인 및 가구 그리고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단위: 빈도, 백분율)

구분	특성	범주	전체		은퇴시기(평균 58.2세)				χ^2 -test
			568(100.0)		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162(28.5)	143(25.2)	144(25.3)	119(21.0)	
개인 특성	연령	60세 미만	86(15.1) ¹⁾	86(100.0)	68(79.1) ²⁾	18(20.9)	0(0.0)	0(0.0)	266.303 **
		60-65세 미만	120(21.1)	120(100.0)	27(22.5)	58(48.3)	35(29.2)	0(0.0)	
		65-70세 미만	121(21.3)	121(100.0)	28(23.1)	24(19.8)	49(40.5)	20(16.5)	
		70-75세 미만	111(19.5)	111(100.0)	22(19.8)	22(19.8)	34(30.6)	33(29.7)	
		75세 이상	130(22.9)	130(100.0)	17(13.1)	21(16.2)	26(20.0)	66(50.8)	
		평균(세)	68.0		63.0	66.4	69.2	75.7	
	은퇴 후 경과기간	5년 미만	172(30.3)	172(100.0)	32(18.6)	43(25.0)	51(29.7)	46(26.7)	78.521 **
		5-10년 미만	159(28.0)	159(100.0)	30(18.9)	43(27.0)	44(27.7)	42(26.4)	
		10-15년 미만	96(16.9)	96(100.0)	27(28.1)	22(22.9)	27(28.1)	20(20.8)	
		15-20년 미만	74(13.0)	74(100.0)	28(37.8)	19(25.7)	17(23.0)	10(13.5)	
		20년 이상	67(11.8)	67(100.0)	45(67.2)	16(23.9)	5(7.5)	1(1.5)	
		평균(세)	9.8		14.4	9.4	7.7	6.7	
학력	초졸이하	212(37.3)	212(100.0)	45(21.2)	48(22.6)	58(27.4)	61(28.8)	26.467 **	
	중졸	125(22.0)	125(100.0)	44(35.2)	31(24.8)	24(19.2)	26(20.8)		
	고졸	134(23.6)	134(100.0)	43(32.1)	43(32.1)	34(25.4)	14(10.4)		
	대졸이상	97(17.1)	97(100.0)	30(30.9)	21(21.6)	28(28.9)	18(18.6)		
		평균	9.1		9.8	9.3	9.4		7.6
배우자유무	유배우자	486(85.6)	486(100.0)	138(28.4)	124(25.5)	127(26.1)	97(20.0)	2.560	
	무배우자	82(14.4)	82(100.0)	24(29.3)	19(23.2)	17(20.7)	22(26.8)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27(22.4)	127(100.0)	31(24.4)	43(33.9)	30(23.6)	23(18.1)	13.031 *	
	보통	149(26.2)	149(100.0)	33(22.1)	37(24.8)	43(28.9)	36(24.2)		
	나쁨	292(51.4)	292(100.0)	98(33.6)	63(21.6)	71(24.3)	60(20.5)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서울/경기	227(40.0)	227(100.0)	66(29.1)	57(25.1)	59(26.0)	45(19.8)	4.814 *
		광역시	184(32.4)	184(100.0)	56(30.4)	43(23.4)	51(27.7)	34(18.5)	
		중소도시	157(27.6)	157(100.0)	40(25.5)	43(27.4)	34(21.7)	40(25.5)	
	주택소유여부	소유	418(73.6)	418(100.0)	123(29.4)	104(24.9)	107(25.6)	84(20.1)	2.431 *
		미소유	95(16.7)	95(100.0)	24(25.3)	27(28.4)	24(25.3)	20(21.1)	
		무응답	55(9.7)	55(100.0)	15(27.3)	12(21.8)	13(23.6)	15(27.3)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11(37.1)	211(100.0)	54(25.6)	48(22.7)	53(25.1)	56(25.6)	27.857 **
		50-100만원 미만	104(18.3)	104(100.0)	27(26.0)	18(17.3)	27(26.0)	32(30.8)	
		100-200만원 미만	117(20.6)	117(100.0)	39(33.3)	30(25.6)	32(27.4)	16(13.7)	
200-300만원 미만		64(11.3)	64(100.0)	21(32.8)	22(34.4)	14(21.9)	7(10.9)		
300만원 이상		72(12.7)	72(100.0)	21(29.2)	25(34.7)	18(25.0)	8(11.1)		
	평균(만원)	141.3		165.5	169.0	129.3	89.7		

구분	특성	범주	전체		은퇴시기(평균 58.2세)				χ^2 -test
			568(100.0)		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162(28.5)	143(25.2)	144(25.3)	119(21.0)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은퇴 사유	정년퇴직	122(21.5)	122(100.0)	11(9.0)	47(38.5)	44(36.1)	20(16.4)	44.646 ***
		권고사직, 명예퇴직	90(15.8)	90(100.0)	30(33.3)	22(24.4)	22(24.4)	16(17.8)	
		건강상이유	198(34.9)	198(100.0)	66(33.3)	36(18.2)	49(24.7)	47(23.7)	
		기타(가계여유/여가/가족돌보기 등)	158(27.8)	158(100.0)	55(34.8)	38(24.1)	29(18.4)	36(22.8)	
	직업	전문/사무직	183(32.2)	183(100.0)	53(29.0)	46(25.1)	55(30.1)	29(15.8)	28.391 **
		서비스/판매직	82(14.4)	82(100.0)	31(37.8)	22(26.8)	17(20.7)	12(14.6)	
		농림어업직	97(17.1)	97(100.0)	19(19.6)	18(18.6)	24(24.7)	36(37.1)	
		생산직	145(25.5)	145(100.0)	44(30.3)	42(29.0)	33(22.8)	26(17.9)	
		단순노무직/기타	61(10.7)	61(100.0)	15(24.6)	15(24.6)	15(24.6)	16(26.2)	
	종사상의 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281(49.5)	281(100.0)	79(28.1)	85(30.2)	69(24.6)	48(17.1)	16.801 *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70(12.3)	70(100.0)	18(25.7)	17(24.3)	24(34.3)	11(15.7)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217(38.2)	217(100.0)	65(30.0)	41(18.9)	51(23.5)	60(27.6)		
월평균 임금 ³⁾	100만원 미만	181(31.9)	181(100.0)	44(24.3)	35(19.3)	50(27.6)	52(28.7)	16.785	
	100-200만원 미만	164(28.9)	164(100.0)	49(29.9)	48(29.3)	39(23.8)	28(17.1)		
	200-300만원 미만	92(16.2)	92(100.0)	23(25.0)	27(29.3)	25(27.2)	17(18.5)		
	300만원 이상	100(17.6)	100(100.0)	36(36.0)	25(25.0)	22(22.0)	17(17.0)		
	무응답	31(5.5)	31(100.0)	10(32.3)	8(25.8)	8(25.8)	5(16.1)		
	평균(만원)	230.5		300.6	243.5	182.8	178.4		
근속년수	10년 미만	99(17.4)	99(100.0)	40(40.0)	21(21.2)	21(21.1)	17(17.2)	48.504 ***	
	10-20년 미만	171(30.1)	171(100.0)	63(36.8)	47(27.5)	35(20.5)	26(15.2)		
	20-30년 미만	144(25.4)	144(100.0)	40(27.8)	39(27.1)	41(28.5)	24(16.7)		
	30년 이상	141(24.8)	141(100.0)	18(12.8)	32(22.7)	45(31.9)	46(32.6)		
	무응답	13(2.3)	13(100.0)	1(7.7)	4(30.8)	2(15.4)	6(46.2)		
	평균(년)	21.0		15.9	20.2	22.4	27.6		
계			568(100.0)		162(100.0)	143(100.0)	144(100.0)	119(100.0)	

주 1) 조사대상자 전체(N=568)을 기준으로 한 백분율

2) 개인, 가구,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의 각 범주에 따른 빈도를 기준으로 한 백분율

3) 2003년을 기준으로(2003=100)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하여 재산출

* p<.05, ** p<.01, *** p<.001

2. 완전은퇴 남성의 은퇴시기별 소득원천 및 소득액 비교

가. 은퇴시기별 소득원천 비교

완전은퇴 남성 개인이 갖는 모든 소득원천의 수와 종류를 산출하여 은퇴시기별로 그 분포를 비교하였다. <표 3>은 소득원천의 수를 비교한 결과로, 완전은퇴 시기에 따라 은퇴 남성이 갖는 소득원천 개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전은퇴 후 소득을 얻는 원천

이 전혀 없는 이들은 분석대상자의 17.4%인 99명으로, 65세 이상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비율(21.0%)이 가장 높고,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비율(19.8%)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근로소득 이외에 별다른 소득원천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이 늦은 시기까지 소득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에 은퇴한 이들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준비 없이 완전은퇴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이들 집단이 은퇴 후 경제적 복지 수준이 가장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분석대상 은퇴자들은 은퇴 후 평균 1.27개의 소득원천을 갖고, 60~6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이 평균 1.46개로 가장 많은 소득원천을 보유하는 반면,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1.10개)과 55~60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1.22개)은 평균(1.27개)보다 적은 수의 소득원천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정년연령 이후에 은퇴하는 이들이 그 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하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원천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3> 은퇴시기별 소득원천의 수

(단위: 빈도, 백분율)

소득원천 개수	전체	은퇴시기				χ^2
		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0개	99(17.4)	32(19.8)	24(16.8)	18(12.5)	25(21.0)	22.474*
1개	275(48.4)	89(54.9)	75(52.4)	65(45.1)	46(38.7)	
2개	145(25.5)	34(21.0)	35(24.5)	43(29.9)	33(27.7)	
3개	40(7.0)	7(4.3)	7(4.9)	13(9.0)	13(10.9)	
4개	9(1.6)	0(0.0)	2(1.4)	5(3.5)	2(1.7)	
계	568(100.0)	162(100.0)	143(100.0)	144(100.0)	119(100.0)	-
평균 개수	1.27	1.10	1.22	1.46	1.34	-

* p<.05, ** p<.01, *** p<.001

완전은퇴 남성 개인이 갖는 모든 소득원천의 종류를 기초로 산출한 소득원천의 분포의 비교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은퇴 후 사적이전소득(166건)과 정부보조금(158건)을 소득원천으로 갖는 이들의 수가 가장 많은 반면, 개인연금(6건)을 소득원천으로 하는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갖는 소득원천에 따라 은퇴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배우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55세 미만 연령대에 은퇴한 남성의 보유비율(39.6%)이 높고, 공적연금의 경우 55~60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33.9%)과 60~6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남성(35.8%)의 보유비율이 높으며, 금융자산의 경우 55~60세 미만에 은퇴한 남성의 보유비율(32.7%)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은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남성(29.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으로서의 사회보험소득의 경우,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보유비율(31.3%)이 높으며 정부보조금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보유비율(32.3%)이 가장 높았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60~6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보유비율(31.9%)이 65세 이상 연

령에 은퇴한 이들의 보유비율(25.9%)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은퇴사유와 공적연금 수급 여건, 그리고 공공부조의 수혜혜택 여부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4> 은퇴시기별 소득원천

(단위: 빈도, 백분율)

소득종류	소득원천		전체	은퇴시기			
				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소득	배우자		96(100.0)	38(39.6)	26(27.1)	20(20.8)	12(12.5)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109(100.0)	13(11.9)	37(33.9)	39(35.8)	20(18.4)
	개인연금소득		6(100.0)	2(33.3)	2(33.3)	1(16.7)	1(16.7)
자산소득	금융자산소득		52(100.0)	15(28.9)	17(32.7)	14(26.9)	6(11.5)
	부동산소득		102(100.0)	30(29.4)	27(26.5)	27(26.5)	18(17.6)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32(100.0)	10(31.3)	5(15.6)	9(28.1)	8(25.0)
		정부보조금	158(100.0)	35(22.1)	25(15.8)	47(29.8)	51(32.3)
	사적이전소득		166(100.0)	35(21.1)	35(21.1)	53(31.9)	43(25.9)

나. 은퇴시기별 월평균 소득액 비교

소득원천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완전은퇴 남성의 은퇴시기별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완전은퇴 시기별로 월평균 소득액에 차이가 있는가를 GLM-test로 검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 중 사회보험소득에서 얻는 소득액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원천을 보유한 은퇴 남성 469명(568명-99명)의 월평균 소득액은 대략 92만원 정도이며, 이른 시기에 은퇴한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102만 8천원)과 55~60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106만원)의 월평균 소득액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60세 이상 연령에 은퇴한 이들은 평균 수준보다 낮고, 특히 65세 이상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월평균 소득액 67만 5천원 정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의 보유 비율을 분석한 <표 4>의 결과를 고려하여 소득원천별 월평균 소득액을 분석한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원천의 보유비율과 소득액의 양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공적연금의 보유비율은 55~60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과 60~6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연금에서 획득하는 월평균 소득은 65세 이상 연령에 은퇴한 이들이 가장 많은 금액(93만 4천원)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동산소득의 경우도 보유비율은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가장 높았으나, 소득 금액은 55~60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금액(126만 1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60세를 기준으로 60세 이후에 은퇴한 이들의 보유비율이 60세 이전에 은퇴한 이들보다 높게 나타나나, 소득액에 있어서는 은퇴 연령이 늦을수록 금액의 양이 적어져 65세 이상 연령에 은퇴한 이들이 가장 낮은 48만 5천원 가량의 사적이전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이 비동

거자녀 등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비율은 높으나, 그 지원의 규모는 결코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박경숙, 2001)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 5> 은퇴시기별 소득원천 보유자의 월평균 소득액

사례수=469⁷⁾, (단위: 만원)

소득종류	소득원천	소득원천 보유자 월평균 소득액	은퇴시기				GLM-test	
			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소득 ¹⁾	배우자	92.99	104.03	88.81	86.15	78.50	0.378	
연금소득 ²⁾	공적연금	83.26	62.31	92.00	76.74	93.40	0.755	
	개인연금	86.67	40.00	175.00	50.00	40.00	-. ⁶⁾	
자산소득 ³⁾	금융자산	60.67	94.00	57.88	33.64	50.00	2.700	
	부동산	96.88	120.60	126.11	75.93	44.94	2.101	
이전소득 ⁴⁾	공적 이전	사회보험소득	37.97	71.20	58.20	19.33	4.75	4.255*
		정부보조금	6.10	6.26	9.20	5.32	5.20	0.765
	사적이전	56.78	73.20	46.94	59.17	48.49	1.009	
월평균 소득액 ⁵⁾		92.06	102.80	106.02	86.09	67.52	2.918*	

주 : 1)~4) 각 소득종류에 따른 보유자 월평균 소득액

5) 각 소득종류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월평균 소득액

6) 전체 보유자가 6명밖에 되지 않아 GLM-test를 실시하지 않음.

7) 568명(전체 대상자)-99명(소득원천이 전혀 없는 은퇴 남성)

* p<.05, ** p<.01, *** p<.001

3. 완전은퇴 남성의 특성별 주된 소득원천 및 소득액 비교

가. 주된 소득원천 비교

완전은퇴 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원천 중 가장 많은 소득을 획득하는 소득원천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정의하고, 각 소득원천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배우자 근로소득: 11, 공적연금소득: 21, 개인연금소득: 22, 금융자산소득은: 31, 부동산자산소득: 32, 공적이전소득 중 사회보험: 41, 정부보조금: 42, 사적이전소득: 43)를 부여하여, 은퇴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 그리고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과 은퇴시기별로 어떠한 소득원천이 주된 소득원천이 되는가를 비교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퇴시기와 상관없이 사적이전소득이 대부분으로 완전은퇴 남성의 실질적인 부양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적 부양체계의 미성숙함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은퇴시기별로 주된 소득원천을 비교해보면, 현재 연령 수준이 낮고 완전은퇴 시기가 빨랐던 은퇴 남성의 경우, 배우자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이 되나, 현재 연령 수준이 높고 늦은 은퇴를 한 이들의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이 되는 경향을 보이며, 은퇴 후 경과기간이 길어

질수록 주된 소득원천이 배우자 근로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연령이 증가하고 은퇴 후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된 소득원천은 배우자 근로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은퇴, 사망 등으로 배우자에 의한 소득이 상실될 경우 은퇴자를 부양하는 부담이 다시 형제자매, 자녀, 친인척 등의 가족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편 55~65세 사이에 은퇴하고 현재연령이 65~70세인 은퇴 남성은 공적연금소득이, 55세 미만은 조기은퇴하고 현재연령이 75세 이상인 남성은 공적이전소득 중 정보보조금이 주된 소득원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년으로 은퇴한 이들은 은퇴 한 후 5~10년 정도 경과한 현 시점에 공적연금이 은퇴 생활의 주된 소득원천이 되고, 이른 시기에 은퇴하여 이미 75세 이상이 된 고령자들은 특별한 소득원천 없이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근로생애에 누적된 공적연금수급권 등과 같은 사회보장혜택의 차이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체로 저학력의 경우,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남성의 경우에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질 뿐, 사적이전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대졸 이상의 높은 학력수준을 갖는 은퇴 남성들은 은퇴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공적연금소득이나 개인연금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인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주된 소득원천의 상이함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은퇴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적연금이, 그 외 사유로 은퇴한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은퇴 후 그나마 공적연금으로 인해 은퇴 후 경제생활이 유지 되지만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완전은퇴한 이들은, 은퇴 후 경제생활을 가족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생애 주된 일자리의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했던 남성들은 공적연금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이 되나, 55세 미만은 조기은퇴한 남성은 부동산 자산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이, 이들 중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은퇴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지위가 낮은 직업군에 종사했던 조기은퇴 남성들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은퇴 후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적자본이론과 노동시장분절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인적자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교육수준이 양호한 노동여건과 사회보험혜택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1차 노동시장에 진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각 개인이 갖는 시간 누적적인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과 기회의 차이에 따른 근로생애의 이질성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을 결정하게 됨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근로생애의 불평등이 은퇴 이후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은퇴 후 소득불평등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은퇴 남성의 대부분이 주된 소득원천으로 사적이전소득을 갖고, 월평균 100~300만원 미만인 은퇴 남성 공적연금,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갖는 은퇴 남성이 부동산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갖는 다는 분석의 결과 또한 노년기 불평등 실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 주된 소득원천 비교

사례수=568

구분	특성	범주	소득 원천의수	전체	은퇴시기			
					55세 미만	55~60세 미만	60~65세 미만	65세 이상
개인 특성	연령	60세 미만	1.05	11 ¹⁾	11	11	-	-
		60-65세 미만	1.12	11	11	21	11/21 ²⁾	-
		65-70세 미만	1.42	21	43	21	21	32/42
		70-75세 미만	1.51	43	43	42/43	43	43
		75세 이상	1.21	43	42	43	43	43
	은퇴 후 경과기간	5년 미만	1.15	11	11	11	21	43
		5-10년 미만	1.40	21	11	21	21	43
		10-15년 미만	1.48	43	11	11/32	43	32
		15-20년 미만	1.11	43	11/43	43	43	43
		20년 이상	1.15	43	43	43	43	43
	학력	초졸이하	1.31	43	11	43	43	43
		중졸	1.23	43	43	43	43	43
		고졸	1.22	21	11	21	43	11/43
		대졸이상	1.29	21	21/22	21	21	43
	배우자유무	유배우자	1.31	43	11	21	43	43
무배우자		1.06	43	43	43	43	43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35	21	32	21	21	21	
	보통	1.19	43	11	21	43	43	
	나쁨	1.28	43	11	11	43	43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서울/경기	1.04	43	11	21	43	43
		광역시	1.38	43	43	11/43	43	43
		중소도시	1.47	43	11/43	21	43	43
	주택소유여부	소유	1.31	43	11	21	43	43
		미소유	1.21	43	43	43	43	43
		무응답	1.09	43	11	43	43	42
	월평균 가구소득	50만원 미만	1.18	43	43	43	43	43
		50-100만원 미만	1.44	43	11	11/21/43	43	43
		100-200만원 미만	1.35	21	11	21	43	21
200-300만원 미만		1.16	21	11	21	21	21	
300만원 이상	1.25	32	32	11/21	21	11/21/31/41/42/43		
은퇴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은퇴 사유	정년퇴직	1.47	21	42/43	21	21	21
		권고사직, 명예퇴직	1.12	43	43	21	43	42/43
		건강상이유	1.26	43	11	11	43	42/43
		기타(가계 여유/여가/가족 돌보기 등)	1.22	43	11/43	43	43	43
	직업	전문/사무직	1.28	21	32/43	21	21	43
		서비스/판매직	1.16	43	11	21	43	11/32
		농림어업직	1.42	43	42/43	43	43	43
		생산직	1.27	43	11	11	43	43
		단순노무직/기타	1.15	43	11	43	11	42
	종사상의 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1.31	21	11	21	21	43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1.11	43	11	11	43	43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27	43	43	43	43	43
	월평균 임금 ¹⁾	100만원 미만	1.29	43	11	11	43	43
		100-200만원 미만	1.31	43	11	32	43	43
200-300만원 미만		1.38	21	11/32	21	21	11/21/43	
300만원 이상		1.08	21	43	21	21	21	
무응답		1.26	32	32/42	21/32/43	43	32/42	
근속년수	10년 미만	1.16	43	11	43	43	42/43	
	10-20년 미만	1.18	43	11	11	43	43	
	20-30년 미만	1.32	43	11	32	43	21	
	30년 이상	1.38	43	43	21	21	43	
	무응답	1.54	32/43	-	11/21/32	32/43	43	
전체평균			1.27					

주 : 1) 배우자의 근로소득(11), 공적연금소득(21), 개인연금소득(22), 금융자산소득(31), 부동산자산소득(32), 공적이전소득 중 사회보험(41),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42), 사적이전소득(43)

2) 주된 소득원천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시함.

나. 월평균 소득액 비교

완전은퇴 남성의 월평균 소득수준과 은퇴자 특성과 은퇴시기에 따라 소득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GLM-test로 검증하였다. <표 7>의 'A'는 은퇴 남성의 월평균 총소득액이고, 'B'는 주된 소득원천에서 획득하는 월평균 소득액이다. 소득원천이 없는 은퇴자를 포함한 전체 은퇴 남성의 월평균 총소득액은 76만원이고, 이 중 주된 소득원천에서 얻는 소득액은 66만 3천원으로 총소득액의 87.2%를 차지한다. 이는 은퇴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주된 소득원천에서 얻는 소득은 대체로 은퇴 남성이 갖는 월평균 총소득액의 85%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은퇴시기별로 비교해보면,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남성이 월평균 82만 5천원, 55~60세 미만 88만 2천원, 60~65세 미만 75만3천원, 65세 이상 연령에 은퇴한 이들이 53만 3천원의 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65세 이상 늦은 시기에 은퇴한 이들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늦은 시기까지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소득원천이 취약하고 지원받는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LM-test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연령이 60~65세, 은퇴 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거주지역이 서울/경기지역이나 중소도시,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 건강상의 사유로 완전은퇴한 경우, 은퇴 전 주된 일자리의 직종이 농림어업직, 종사상의 지위가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였던 경우, 근속년수가 30년 이상인 집단에서 은퇴시기에 따른 소득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결과들에서 대체적으로 나타난 경향은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조기은퇴자들의 소득액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표 6>의 분석결과에서 55세 미만 조기은퇴자들의 주된 소득원천이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이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의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생애주기 상 생존하는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연령수준이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인하는 차이로 이해된다. 그러나 55~60세 미만 연령에 완전은퇴를 하여 경과기간이 5년 미만으로 현재 연령이 60~65세 미만에 해당하는 은퇴자들의 소득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고, 은퇴 전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집단에서 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결과는, 55세 미만 연령에 은퇴한 이들의 소득액과 같은 배우자근로소득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공적연금 수급액이나 자산소득 규모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 7> 월평균 소득액 비교

사례수=568, (단위: 만원)

구분	특성	범주	전체		55세 미만		55-60세미만		60-65세미만		65세 이상		GLM-test ²⁾
			A ¹⁾	B	A	B	A	B	A	B	A	B	
개인특성	연령	60세 미만	113.8	99.3	106.5	92.9	141.6	123.2	-	-	-	-	1.323 ³⁾
		60-65세 미만	88.6	77.4	75.6	62.9	95.3	83.9	87.7	77.9	-	-	14.454**
		65-70세 미만	77.0	68.8	81.6	70.1	82.8	75.0	81.4	73.3	53.1	48.8	0.243
		70-75세 미만	70.7	57.3	45.7	38.5	68.9	53.0	67.3	55.7	92.1	74.5	2.337
		75세 이상	96.8	93.2	46.7	42.0	49.5	47.3	57.8	55.1	34.0	30.8	1.577
	은퇴 후 경과 기간	5년 미만	86.8	79.0	86.9	80.0	124.7	114.6	88.6	79.2	49.3	44.9	3.256*
		5-10년 미만	87.8	73.2	117.0	94.7	86.7	73.1	81.5	70.8	74.7	60.5	1.097
		10-15년 미만	124.4	117.4	54.8	50.1	51.6	42.0	57.1	49.1	51.4	49.0	1.158
		15-20년 미만	71.4	61.8	89.1	76.9	83.3	66.0	63.7	61.4	12.1	12.1	1.106
		20년 이상	60.5	53.2	68.8	58.5	50.5	49.6	24.0	24.0	30.0	20.0	0.406
	학력	초졸이하	83.4	78.7	73.9	69.8	59.4	51.9	45.3	42.2	30.8	27.2	0.492
		중졸	60.6	52.6	70.0	63.2	48.0	44.7	83.3	64.6	38.1	33.2	2.286
		고졸	91.8	76.5	100.0	76.6	108.6	90.5	67.7	61.4	74.1	69.6	0.976
		대졸이상	130.0	114.6	88.7	77.4	171.6	156.0	139.6	127.0	135.3	109.1	1.454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97.3	86.4	87.8	75.4	96.2	83.7	82.2	72.9	60.1	51.6	0.478
		무배우자	34.9	32.2	51.8	47.3	36.5	34.7	24.4	22.8	23.3	20.9	1.120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177.7	156.4	118.3	85.2	139.5	121.6	122.6	106.8	97.1	79.8	1.184
		보통	68.6	61.3	69.0	64.2	84.8	76.0	64.4	55.8	56.7	50.3	0.723
		나쁨	59.5	53.6	75.7	69.2	55.3	47.7	62.0	56.9	34.5	30.3	3.365*
	가구특성	거주 지역	서울/경기	91.8	80.3	120.1	100.3	109.5	97.5	67.9	61.4	58.9	53.7
광역시			108.3	99.4	60.2	55.8	66.6	57.4	86.6	77.0	67.3	53.4	1.423
중소도시			59.9	51.8	51.7	44.8	81.6	70.1	71.4	61.6	35.2	30.8	4.007**
주택 소유 여부		소유	97.1	85.7	84.2	70.9	92.1	80.3	80.8	71.0	59.3	50.1	0.585
		미소유	61.4	56.0	83.8	77.1	65.2	56.1	52.0	49.0	40.6	39.0	1.272
		무응답	68.5	63.3	66.1	64.5	106.2	97.6	73.0	67.0	36.7	31.5	1.096
월평균 가구 소득		50만원 미만	44.2	40.3	35.9	34.1	71.4	67.0	41.3	36.3	31.5	27.2	2.023
		50-100만원 미만	113.4	108.2	49.0	42.9	45.7	40.2	46.9	43.4	43.4	39.2	0.713
		100-200만원 미만	84.8	73.6	69.8	57.8	78.0	72.3	109.5	92.1	84.6	77.4	2.275
		200-300만원 미만	100.3	89.8	84.8	76.9	93.5	84.3	119.4	107.2	130.0	111.1	0.769
300만원 이상	176.6	146.2	266.7	222.6	158.8	123.2	123.1	116.7	116.1	83.6	3.104*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은퇴 사유	정년퇴직	110.9	95.3	66.5	56.7	119.1	103.3	106.4	93.6	125.8	101.7	0.598
		권고사직, 명예퇴직	147.2	140.8	70.9	68.1	91.2	74.0	63.7	61.6	44.6	43.3	1.345
		건강상이유	55.7	50.4	77.6	69.8	51.5	48.6	53.6	49.6	30.4	25.6	3.279*
		기타(가계여유/여가/가족돌보기 등)	78.3	65.5	97.9	77.5	83.1	74.0	73.8	60.1	47.0	42.7	1.647
	직업	전문/사무직	104.4	89.4	102.2	81.5	120.3	107.1	100.2	90.1	90.8	74.5	0.372
		서비스/판매직	102.2	92.1	101.1	92.0	130.1	110.1	96.4	92.9	61.8	58.4	0.809
		농림어업직	40.3	34.8	66.9	60.8	48.4	40.2	39.8	36.3	22.4	17.4	2.893*
		생산직	109.3	102.6	65.1	61.9	61.6	55.5	61.8	50.3	52.1	46.8	1.394
		단순노무직/기타	48.3	40.4	45.3	32.9	50.6	42.5	46.6	38.4	50.6	47.4	0.024
	종사상의 지위	상용직임금근로자	109.1	98.1	63.3	57.7	101.3	86.8	93.8	82.0	74.4	62.8	1.419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45.4	42.5	38.4	37.2	49.9	45.2	37.2	35.0	67.6	62.6	0.640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75.3	65.0	118.0	97.0	77.0	70.6	68.2	61.7	33.9	29.3	6.610***

구분	특성	범주	전체		55세 미만		55-60세미만		60-65세미만		65세 이상		GLM-test ²⁾
			A ¹⁾	B	A	B	A	B	A	B	A	B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46.4	41.1	59.9	55.2	55.5	48.6	48.1	39.7	27.2	25.6	2.934*
		100-200만원 미만	103.8	94.7	57.7	50.3	76.5	63.9	54.0	46.8	50.5	44.0	1.456
		200-300만원 미만	117.0	101.1	124.2	100.4	101.7	86.1	147.0	134.6	86.9	76.9	1.320
		300만원 이상	119.4	104.7	119.8	101.2	145.4	136.3	99.3	93.3	106.1	80.4	0.357
		무응답	66.6	60.7	73.0	69.5	77.6	67.5	59.8	52.5	47.0	45.0	0.190
	근속년수	10년 미만	73.9	63.8	50.3	45.7	90.1	79.8	87.0	73.8	93.4	74.2	1.324
		10-20년 미만	124.0	111.7	112.1	91.4	83.6	73.2	51.6	48.2	54.6	48.5	1.478
		20-30년 미만	72.7	64.8	77.3	71.0	62.9	57.3	72.0	61.6	82.1	72.2	0.320
		30년 이상	74.1	65.9	66.8	61.9	128.1	110.3	89.8	82.0	24.0	20.9	6.172**
		무응답	56.4	46.0	0.0	0.0	61.2	39.8	110.5	95.0	44.5	41.5	0.650
전체평균			76.0	66.3	82.5	71.2	88.2	77.2	75.3	67.0	53.3	45.9	0.335
B/A(%)			87.2%		86.3%		87.5%		88.9%		86.1%		

주 : 1) A: 월평균 총소득액, B: 주된 소득원천에서의 월평균 소득액, 따라서, A-B는 그 외 소득원천에서의 월평균 소득액이 됨. A와B의 소득액 산출에는 소득원천을 보유하지 않은 99명도 포함.
 2) 월평균 총소득액으로 GLM-test를 실시함.
 3) 집단 내(은퇴시기 내) 사례수 중 1개 이하를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이탤릭체로 표기함).
 * p<.05, ** p<.01, *** p<.001

4. 주된 소득원천 결정요인

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을 파악하기 위한 다항로지분석의 결과는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표 8>에 제시한 모델 1에서는 은퇴 후 소득원천이 없는 은퇴 남성 집단을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였고, 모델 2에서는 배우자근로소득, 모델 3에서는 연금소득, 모델 4에서는 자산소득, 모델 5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만이 비교대상이 되므로 공적이전소득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이항로지모델로 분석되었다.

모델 1에서는 현재연령, 거주 지역, 주택소유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의 은퇴 사유, 종사상의 지위, 근속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변수별로 그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완전은퇴 남성의 현재연령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원천이 없기보다는 배우자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연령의 변수는 배우자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가질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달리 월평균 가구소득은 배우자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갖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원천을 갖는 경우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원천이 없기보다는 어떠한 소득원천이든지 소득원천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갖는 경우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외에 정년퇴직의 은퇴사유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근속년수가 긴 정년퇴직 은퇴 남성이 연금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갖는

데에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근속년수가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생애 주된 일자리의 취업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가 부(-)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생애 기간 자산을 축적한 비임금근로자가 은퇴 후 자산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적이전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지는 경우에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정(+)³⁾의 영향을 미치고 서울/경기지역 거주와 주택소유의 변수가 부(-)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사회보험소득이나 정부보조금 등의 수혜혜택이 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적연금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갖는 데에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정년퇴직의 은퇴사유가 정(+)⁵⁾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서울/경기지역 거주와 주택소유의 변수가 부(-)⁶⁾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적이전소득을 주된 소득이전으로 하는 은퇴 남성 집단을 소득원천이 없는 은퇴 남성과 비교하면, 단순히 소득계층이 낮은 이들이거나 고령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배우자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하는 은퇴 남성 집단이 준거변수로 분석된 모델 2에서는 현재연령, 배우자유무, 거주 지역, 은퇴사유, 종사상의 지위, 근속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우선 현재연령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이 배우자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델 1의 결과에서 현재연령 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배우자가 있는 은퇴 남성은 배우자근로소득보다는 연금이나 자산 또는 공적이전소득이 주된 소득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배우자근로소득보다는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년으로 은퇴한 이들은 배우자근로소득보다는 연금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하였던 은퇴자들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 은퇴 후 배우자근로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간 안정적인 고용이나 근로경력이 은퇴자 스스로 노후 소득원천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들이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공적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체계보다는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은퇴 남성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 비해 배우자근로소득보다는 공적이전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현재연령의 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이들이 공적이전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해보면, 대체로 배우자의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고령의 지방거주자들에게는 사회보험이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연금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하는 은퇴 남성 집단이 준거변수로 분석된 모델 3에서는 거주 지역, 종사상의 지위, 근속년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거주 지역변수는 모델 1과 모델 2의 결과와 같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은퇴 남성의 경우 연금소득보다는 공적이전소득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은 낮았다. 은퇴 전 임금근로자로 일하였던 은퇴 남성은

연금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으로 가질 가능성은 낮으며, 근속 연수가 길수록 연금소득보다는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로 장기간 근속한 이들이 연금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하는 은퇴 남성 집단이 준거변수로 분석된 모델 4에서는 거주 지역, 주택소유여부, 은퇴사유, 종사상의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서울/경기에 거주자와 주택을 소유하는 은퇴 남성은 자산소득보다는 공적·사적이전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의 수혜대상이 자산보유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이들도 자산소득보다 공적이전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이들 중 사회보험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로 일한 은퇴 남성은 은퇴 후 자산소득보다는 공적·사적이전소득이 주된 소득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모델 1, 모델 2, 모델 3에서 비임금근로의 형태로 일하였던 은퇴 남성이 은퇴 후 자산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공적이전소득을 준거변수로 사적이전소득을 비교한 모델 5에서는 거주지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경기 거주 은퇴 남성이 공적이전소득보다는 사적이전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기 이외지역의 은퇴 남성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으로 공적이전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앞선 분석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8>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 결정요인: 다항로지분석

사례수: 568

구분	특성		모델 1				
			배우자근로소득 /주된소득원천없음	연금소득 /주된소득원천없음	자산소득 /주된소득원천없음	공적이전소득 /주된소득원천없음	사적이전소득 /주된소득원천없음
상수항			-7.483(3.997)	-1.099(4.858)	0.297(3.666)	0.600(3.473)	-0.308(3.177)
개인 특성	현재연령		-0.159(0.054)**	-0.052(0.065)	-0.053(0.049)	-0.010(0.046)	0.000(0.042)
	은퇴 시기 (연령)	55세 미만	-1.444(1.066)	-1.245(1.275)	-0.594(1.003)	-0.900(0.975)	-0.825(0.886)
		55-60세 미만	-0.868(0.759)	-0.172(0.869)	-0.187(0.703)	-1.277(0.715)	-0.689(0.631)
		60-65세 미만	-0.229(0.627)	0.257(0.677)	0.058(0.585)	-0.635(0.606)	0.488(0.512)
	은퇴 경과기간		0.065(0.049)	0.019(0.063)	0.043(0.046)	0.072(0.043)	0.072(0.040)
	학력		-0.033(0.047)	0.075(0.052)	0.022(0.045)	-0.033(0.048)	0.008(0.040)
	배우자유무(유배우자)		17.780(0.000)	0.725(0.537)	0.543(0.446)	-0.146(0.404)	0.124(0.360)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0.379(0.456)	0.179(0.427)	0.339(0.394)	-0.327(0.509)	-0.279(0.412)	
가구 특성	거주지역(서울/경기)		-0.269(0.327)	-0.440(0.356)	0.112(0.311)	-1.851(0.404)***	-0.579(0.290)*
	주택소유여부(소유)		-0.559(0.402)	-0.528(0.463)	0.292(0.440)	-0.948(0.420)*	-0.787(0.360)*
	월평균 가구소득		0.248(0.093)**	0.338(0.102)**	0.285(0.091)**	0.222(0.099)*	0.161(0.080)*
은퇴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은퇴 사유	정년퇴직	0.664(0.604)	2.003(0.621)**	0.821(0.569)	1.029(0.630)	1.277(0.524)*
		권고사직/명예퇴직	-0.322(0.525)	0.561(0.595)	0.018(0.487)	0.324(0.554)	0.462(0.449)
		건강상이유	0.360(0.400)	0.277(0.566)	-0.342(0.394)	0.655(0.422)	0.173(0.358)
	직업	전문사무직	-0.084(0.481)	0.530(0.492)	0.608(0.433)	0.583(0.493)	0.429(0.147)
		생산직	0.552(0.409)	0.078(0.500)	0.314(0.438)	-0.006(0.450)	0.604(0.380)
	종사상의지위(상용/임시/일시직임금근로자)		0.090(0.388)	0.957(0.553)	-1.179(0.399)**	0.052(0.412)	-0.475(0.357)
	월평균 임금		-0.009(0.165)	-0.062(0.194)	0.128(0.143)	-0.014(0.145)	-0.058(0.122)
근속년수		0.003(0.015)	0.041(0.015)**	0.032(0.014)*	0.000(0.015)	0.006(0.013)	
N			568				
-2 Log Likelihood			1638.580				
Chi-Square			377.243***				
Degrees of freedom			95				

* p<.05, ** p<.01, *** p<.001

<표 9>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 결정요인: 다항로짓분석(계속)

사례수: 568

구분	특성		모델 2			
			연금소득 /배우자근로소득	자산소득 /배우자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배우자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배우자근로소득
상수항			6.651(5.359)	6.818(4.332)	5.627(4.361)	5.155(4.160)
개인 특성	현재연령		0.106(0.072)	0.124(0.058)*	0.183(0.057)**	0.191(0.055)**
	은퇴 시기 (연령)	55세 미만	0.121(1.381)	1.110(1.138)	1.066(1.149)	0.935(1.083)
		55-60세 미만	0.714(0.934)	0.838(0.792)	-0.035(0.826)	0.429(0.761)
		60-65세 미만	0.426(0.731)	0.363(0.653)	-0.227(0.684)	0.803(0.605)
	은퇴 경과기간		-0.043(0.068)	-0.033(0.052)	-0.002(0.050)	-0.006(0.048)
	학력		0.088(0.056)	0.039(0.049)	-0.017(0.053)	0.019(0.047)
	배우자유무(유배우자)		-17.587(0.539)***	-17.702(0.448)***	-18.263(0.385)***	-18.147(0.000)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0.565(0.457)	0.774(0.435)	0.172(0.561)	0.173(0.467)	
가구 특성	거주지역(서울/경기)		-0.097(0.383)	0.450(0.346)	-1.575(0.447)***	-0.234(0.339)
	주택소유여부(소유)		0.057(0.488)	0.836(0.467)	-0.627(0.464)	-0.278(0.409)
	월평균 가구소득		0.075(0.119)	0.023(0.110)	0.008(0.119)	-0.091(0.101)
은퇴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은퇴 사유	정년퇴직	1.362(0.622)*	0.225(0.589)	0.316(0.662)	0.615(0.561)
		권고사직/명예퇴직	0.844(0.637)	0.380(0.552)	0.520(0.632)	0.756(0.544)
		건강상이유	-0.079(0.577)	-0.801(0.423)	0.334(0.476)	-0.132(0.418)
	직업	전문사무직	0.678(0.542)	0.832(0.497)	0.812(0.556)	0.665(0.495)
		생산직	-0.497(0.513)	-0.177(0.463)	-0.525(0.481)	0.139(0.414)
	종사상의지위(상용/임시/일시직임금근로자)		0.819(0.571)	-1.512(0.433)***	-0.128(0.451)	-0.686(0.402)
	월평균 임금		0.028(0.228)	0.207(0.189)	0.045(0.196)	0.024(0.181)
근속년수		0.043(0.016)**	0.032(0.016)*	0.004(0.017)	0.008(0.015)	
N			469			
-2 Log Likelihood			1143.782			
Chi-Square			346.489***			
Degrees of freedom			76			

* p<.05, ** p<.01, *** p<.001

<표 10>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 결정요인: 다항로지분석(계속)

사례수: 568

구분	특성		모델 3			모델 4		모델5
			자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상수항			0.327(5.068)	-2.312(5.014)	-2.618(4.819)	-2.353(4.006)	-2.442(3.728)	-0.228(3.123)
개인 특성	현재연령		0.016(0.069)	0.091(0.068)	0.097(0.066)	0.079(0.054)	0.085(0.051)	0.009(0.041)
	은퇴 연령	55세 미만	1.030(1.311)	1.133(1.339)	1.027(1.263)	0.231(1.127)	0.163(1.023)	0.115(0.915)
		55-60세 미만	0.152(0.860)	-0.613(0.900)	-0.184(0.826)	-0.857(0.799)	-0.444(0.703)	0.543(0.667)
		60-65세 미만	-0.123(0.672)	-0.658(0.710)	0.357(0.626)	-0.462(0.666)	0.496(0.562)	1.061(0.554)
	은퇴 경과기간		0.003(0.066)	0.027(0.065)	0.021(0.062)	0.022(0.050)	0.017(0.046)	-0.010(0.038)
	학력		-0.042(0.054)	-0.104(0.059)	-0.065(0.052)	-0.056(0.056)	-0.019(0.047)	0.031(0.047)
	배우자유무(유배우자)		-0.123(0.595)	-0.690(0.586)	-0.568(0.540)	-0.686(0.516)	-0.531(0.465)	0.180(0.395)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0.094(0.393)	-0.529(0.514)	-0.495(0.408)	-0.771(0.516)	-0.704(0.406)	0.067(0.512)	
가구 특성	거주지역(서울/경기)		0.546(0.365)	-1.464(0.470)**	-0.148(0.360)	-1.922(0.442)***	-0.653(0.326)*	1.315(0.407)**
	주택소유여부(소유)		0.795(0.525)	-0.764(0.524)	-0.416(0.462)	-1.670(0.528)**	-1.379(0.458)**	0.278(0.400)
	월평균 가구소득		-0.065(0.114)	-0.047(0.131)	-0.162(0.109)	0.021(0.125)	-0.095(0.100)	-0.137(0.111)
은퇴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은퇴 사유	정년퇴직	-1.157(0.605)	-1.077(0.677)	-0.775(0.584)	-0.065(0.662)	0.230(0.553)	0.472(0.573)
		권고사직/명예퇴직	-0.448(0.616)	-0.311(0.696)	-0.158(0.610)	-0.045(0.633)	0.120(0.523)	0.327(0.553)
		건강상이유	-0.795(0.605)	0.445(0.633)	-0.013(0.590)	1.130(0.491)*	0.653(0.422)	-0.409(0.427)
	직업	전문사무직	-0.051(0.492)	0.019(0.556)	-0.142(0.476)	-0.023(0.529)	-0.151(0.444)	-0.057(0.498)
		생산직	0.102(0.539)	-0.133(0.568)	0.496(0.500)	-0.260(0.524)	0.319(0.442)	0.665(0.436)
	종사상의지위(상용/임시/일시직임금근로자)		-2.268(0.580)***	-0.821(0.607)	-1.362(0.563)*	1.412(0.490)**	0.869(0.426)*	-0.618(0.401)
	월평균 임금		0.214(0.194)	0.089(0.205)	0.071(0.190)	-0.183(0.175)	-0.222(0.152)	-0.059(0.142)
근속년수		-0.011(0.015)	-0.036(0.017)*	-0.032(0.014)*	-0.026(0.016)	-0.023(0.013)	0.000(0.013)	
N			380			300		202
-2 Log Likelihood			803.305			516.065		232.699
Chi-Square			231.208***			127.313***		31.603*
Degrees of freedom			57			38		19

* p<.05, ** p<.01, *** p<.001

5. 월평균 소득액 결정요인

완전은퇴 남성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토빗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은퇴 남성의 주관적 건강상태, 거주 지역, 주택소유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종사상지위와 임금, 소득원천의 수 그리고 공적연금을 제외한 주된 소득원천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우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은퇴 남성의 은퇴 후 소득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소득계층이 높은 은퇴자들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은퇴 후 소득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은퇴 남성들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은퇴 남성들에 비해 은퇴 후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실된 자신의 소득을 대체하는 배우자의 근로활동이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생애 주된 근로경력과 자산축적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소유의 변수가 부(-)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주택을 소유하여 부동산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인 공공부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부보조금 등과 같은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의 특성 중 종사상의 지위는 은퇴 후 소득액에 부(-)의 영향을 미쳐, 임금근로자로서 근로생애를 보냈던 은퇴 남성들이 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인 비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은퇴 후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임금근로자들이 근로생애동안 축적된 자산의 규모가 임금근로자의 연금소득 등의 소득수준보다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는 달리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정(+)의 영향을 미쳐, 임금수준이 높았던 은퇴 남성일수록 은퇴 후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생애 기간에서의 노동경력과 지위가 은퇴 후 소득에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원천과 관련해서는 <표 7>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주된 소득원천이 은퇴 남성의 월평균 총 소득액을 구성하는 비중이 85%를 상회할 정도로 높고, 은퇴 남성이 평균 보유하는 소득원천의 수도 1.27개로 많지 않을지라도, 소득원천의 개수가 많을수록 은퇴 후 소득수준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나의 소득원천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수의 소득원천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적이전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하는 은퇴 남성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각 소득원천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배우자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자산소득이 정(+)의 영향을 미쳐, 이들 소득원천을 주된 소득으로 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은퇴 후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공적이전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하는 은퇴 남성은 사적이전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하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액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사적이전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액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적이전소득이 은퇴자들을 비롯한 고령자들이 생계비를 조달하는 주된 경로이기는 하지만, 그 지원의 규모는 크지 않다는 선행연구(박경숙, 2001; 방하남, 2004)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표 11> 은퇴 후 월평균 총소득액 결정요인: 토빗분석

사례수=568

구분	특성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			-67.522(98.505)	
Scale			94.012(3.098)	
개인특성	현재연령		-1.487(1.281)	
	은퇴시기(연령) (65세이상)	55세 미만	6.171(26.889)	
		55-60세 미만	4.002(18.873)	
		60-65세 미만	-3.106(15.310)	
	은퇴 후 경과기간		0.822(1.174)	
	학력		1.680(1.205)	
가구특성	배우자유무(유배우자)		20.810(12.726)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27.611(11.050)*	
	거주지역(서울/경기)		36.638(9.235)***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주택소유여부(소유)		-27.600(11.005)*	
	월평균 가구소득		8.440(2.579)**	
	은퇴 사유	정년퇴직 권고사직/명예퇴직 건강상이유	26.060(14.473) -1.802(13.935) -4.629(11.278)	
소득원천	직업	전문사무직 생산직	12.198(11.114) -1.622(11.454)	
	종사상의지위(상용/임시/일시직임금근로자)		-29.639(10.856)**	
	월평균 임금		13.075(4.052)**	
소득원천	근속년수		-0.068(0.372)	
	소득원천의 개수		55.751(5.685)***	
	주된 소득원천 (사적이전소득)	배우자근로소득		57.670(13.550)***
		연금소득		44.148(14.487)**
자산소득			61.042(12.963)***	
		공적이전소득	23.780(13.687)	
N			568	
Noncensored			469	
Left Censored			99	
Log Likelihood			-2844.764	
Chi-Square			302.12***	
Pseudo R ²			0.0504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IPS) 6차년(2003년)도 ‘중고령자’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완전은퇴 남성의 소득원천과 소득액을 은퇴시기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주된 소득원천과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각각 다항로짓분석 모델(Multinomial Logit Analysis)과 토빗모델분석(Tobit Analysis)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은퇴 남성은 은퇴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평균 1.27개의 소득원에서 얻고 있었으며, 총 소득액의 85%이상을 주된 소득원천에서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지 못하며 주된 소득원천을 상실할 경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을 1차 안전망으로 하여, 아래로는 공적연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에서는 경로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를 지급하고,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는 최종안전망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위로는 피고용자의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으며, 그 위로는 개인연금 등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추가적으로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층구조이다. 분석결과로 보아 자신의 근로소득을 상실한 은퇴자들이 다층구조에 따른 다양한 소득원천을 보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고령화된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점차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근로생애는 짧아지고 은퇴생애는 길어지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소득원천과 일정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소득원천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함으로써 하나의 원천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배우자의 사망 등 생애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후반기 은퇴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천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배우자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하는 조기은퇴 남성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천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배우자근로소득이 조기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이 된다면, 우리사회에서 중년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계의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다주는 부가적인 노동이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계형 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중년기 여성노동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성격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완전은퇴 남성의 주된 소득원천은 배우자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대부분이나, 은퇴 시기와 각 개인의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근로생애 동안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자산축적의 기회 그리고 은퇴할 시점에서의 사회보험수급혜택의 여부와 정부의 공공부조 수급자격 충족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주된 소득원천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50대 중반도 되기 전에 준비되지 않은 조기은퇴 남성은 배우자근로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은퇴 전 생애 주된 일자리에

서의 장기간 고용되어 높은 수준을 임금을 받고 정년퇴직한 은퇴 남성은 연금소득이 은퇴 생활의 주된 소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서울 및 경기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생애 비임금근로자로 일하였던 은퇴 남성은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가지며, 지방소도시에 거주하는 고연령층 은퇴 남성과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남성은 공적이전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원천으로 갖는다. 이는 생애 근로경력, 이질성과 근로생애 동안에 획득했던 기회와 혜택의 시간 누적적인 결과가 은퇴 후 소득원천을 결정하고, 결정된 소득원천에 따라 소득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생애과정, 특히 노동경력에서의 기회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불평등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는 노년기 불평등이 노동경력을 통해서 얻는 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는 노력이 단순히 근로여건이나 적극적 인력 활용, 또는 단편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로서만 다루어지는 차원을 넘어, 개인 및 가계의 전 생애의 과정을 좌우하는 기본을 향상시킨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으로 노년기 소득 불평등까지 연계하여 접근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어떠한 소득원천을 보유하고느냐에 따라 소득수준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원천을 보유하는 것과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임을 시사한다. 예컨대 다수의 은퇴 남성,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을 주된 소득원천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자녀 등 가족을 통해 얻는 사적이전소득은 그리 크지 않아 공적이전소득과 같이 은퇴 후 총소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달리 배우자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그리고 자산소득은 은퇴 남성의 월평균 총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자산소득에서 획득하는 소득액이 공적이전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에 비해 그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우자근로소득이 생애주기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 있고, 후반기 은퇴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원천이 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이나 자산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나 가족을 통하여 얻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보다는 은퇴 후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는데 조금 더 많은 소득액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임금근로자로서 근로생애를 가지는 은퇴 남성들이 자산소득을 은퇴 후 주된 소득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았던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국민연금의 자영업자로까지 적용 확대된 것이 1999년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인 데에 따른 결과라면, 향후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들이 공적연금가입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퇴 후 소득원천을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Abbot, J.(1977).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of the Elderly; Some Black-White Difference". *Social Security Bulletin*, 40, 16-42.
- Gustman, A. A. & Steinmeier, T. L.(1984). "Partial Retirement and the Analysis of Retirement Behavi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7, 403-415.
- Hardy, A.(1985). Occupational Structure and Retirement. In J.S. Blau(Eds). *Current Perspectives on Aging and the Life Cycle*. Greenwich, CT:JAI Press Inc, 111-146.
- Herz, D. E.(1995). "Work After Early Retirement: an increasing trend among men." *Monthly Labor Review*, April, 13-20.
- Hayward, M. K., Grady, W. R., Hardy, M. A. & Sommers, D.(1989). "Occupational Influences on Retirement, Disability and Death". *Demography*, 26(3), 393-409.
- Kohli, M.(1988). "Aging as a Challenge for Sociological Theory", *Aging and Society*, 8, 367-394.
- Lazear, E.(1979). "Why is There Mandatory Retir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1261-1284.
- McDonnell, K. J.(2001). "Income of the Retired Population".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EBRI)*, 22(6), 9-12.
- _____ (2006). "Income of the Elderly Population, Age 65 and Over, 2004".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EBRI)*, 27(1), 5-7.
- OECD(2001). 『Economic Survey of Korea』 . 1-12.
- _____ (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 1-147.
- OECD DB.(2006). "Employment/Population ratio, activity and unemployment rates by selected age group: Men".
- Quinn, J. F.(1981). "The Extent and Correlates of Partial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21, 634-643.
- Quinn, J. F, Burkhauser, R. V., & Myers D. A.(1990). *Passing the Torch: The Influence of Economic Incentives on Work and Retirement*, Upjohn Institute.
- Quinn, J. F & Burkhauser, R. V.(1994). Retirement and Labor Force Behavior of Elderly. In L. Martin & S. Preston.(eds.). *Demography of Aging*,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Ruhm, C. J.(1990b). " Bridge Jobs and Partial Retirement", 8(4), 482-501.

- _____ (1990a). "Why Older Americans Stop Working", *The Gerontologist*, 29(3), 294-299.
- _____ (1991). "Career Employment and Job Stopping", *Industrial Relations*, 30(2), 193-208.
- Scherer, P.(2002). "Age of withdrawal for the Labor Force in OECD Countries". *Labo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49.
- 권문일(1997). 「노인의 경제적 복지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13(2), 191-223.
- 김인숙(2006). 「중년기 직업종사자의 은퇴 후를 대비한 재정적 준비: 공적 연금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3), 67-87.
- 김일중(1999). 「노후대비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한국정책학회보』, 8(1), 137-154.
- 김원식·방하남(2005). 「외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퇴직연금」.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153-191.
- 김정환(2006). 「고령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고령화사회의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노동경제학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토론회자료.
- 김지경(2005). 「성별 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분석」.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김태일(2007).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부학연구』, 13(1), 191-213.
- 김희삼(2007). 「사적소득이전과 노인소득보장」. 『제 8회 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509-560.
- 노동부(2005).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 보고서*.
- _____ (2006).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 분석*.
- 동아일보(2007). 「역모기지 시행 한 달 평균 74세-월105만원 받아」. 8월 15일자.
- 박경숙(2001). 「노년기 불평등의 미래」. 『한국사회학』, 35(6호), 141-168.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4).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석재은(2005).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 35-69.
-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손병돈(1999). 「부모 부양의 동기와 재분배 효과: 가족간 소득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9(2), 59-78.
- 안종범·전승훈(2002). 「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 4회 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717-739.
- 오정일·최우석(2007). 「역저당제도의 소득효과 측정」.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 331-348.
- 장지연(2003).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대안적 은퇴과정으로서의 근로시간단축과 자영업창업의 비중」. 『한국사회학』, 37(2), 95-121.
- _____ (2005).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정책」. 『THE HRD REVIEW: 직업과 인력개발』, 8(2), 16-27.

- 지은정(2006). 「중고령자의 퇴직전환 및 노후소득보장과 점진적 퇴직지원」. 『한국사회복지학』, 58(3), 135-168.
- 최은희(2006).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역저당제도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효미(2007). 「노인가구의 소득 원천」.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4월호, 69-79.
-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
- _____ (2007). *사회통계조사*.
- 황수경·황준욱·신현구·어수봉·장지연(2004). 「고령사회대비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